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34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6.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미취업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¹⁾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6.)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4조)

-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수립

마. 지원 사업²⁾에 관한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바.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와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사.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안 제10조)

-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병행

아.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청년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1. 16. ~ 2021. 11. 21.

-
- 2)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청년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회적 고립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청년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립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립이 길어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함.